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도매상에 한하여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9개 법률은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11개 법률에 대해서는 결격조항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 삭제 및 제11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21개”를 “12개”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2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5조(중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8조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2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u>21개</u>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u>제2조(「국민연금법」의 개정) 국 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2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u> <u>제4조(「노후준비 지원법」의 개 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5조(「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의 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6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u>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u>12개</u>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u>

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u>제7조(「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9조제1항제1호의3을 삭제한다.</u> <u>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7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9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15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u>제10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3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	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u><삭 제></u> <u><삭 제></u> <u>제3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15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u>제4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3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
--	--

이 한다.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u>제11조(「약사법」의 개정) 약사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u> <u>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46조제4호를 삭제한다.</u> <u>제12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u>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u>제13조(「의료기기법」의 개정)</u>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u>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이 한다.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u>제5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u>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 만 해당한다.</u> <u>제6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u>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u>제7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 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	---

건인	건인
<u>제14조(「의료법」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48조의2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u>제15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3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u>제16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3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u><삭 제></u>
<u>제17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23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u>제9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23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8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9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0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10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1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삭 제>

제12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29
----------	------

발의연월일 : 2024. 9. 2.

발 의 자 : 박주민 · 이용선 · 염태영
박홍근 · 서영교 · 이원택
김남희 · 황정아 · 김문수
이기현 · 박 정 · 박정현
김남근 · 김용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

조향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향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도매상에 한하여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9개 법률은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11개 법률에 대해서는 결격조향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 삭제 및 제11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4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5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제6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7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1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12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

으로 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1. 2. (생략) 3. <u>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u> 4.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2. (생략) 3. <u>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u> 4. 5. (생략)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u> 4. 5.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u> 4. 5. (현행과 같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 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u>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4. ~ 8. (생략) ⑤·⑥ (생략)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u>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 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u> ⑧ (생략)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 성년후견인인 경우</u> ⑧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u>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u> <u>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인 경우</u> ② (생략)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u> <u>피성년후견인인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약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2. (생략) 3.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⑨ ~ ⑫ (생략)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생략) 3.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⑤ ~ ⑨ (생략)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 ----- ----- ----- ---. <u>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5. (생략) ③ ~ ⑪ (생략)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u>	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u>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u> <u>니한 자</u> 3. ~ 6. (생 략) ⑥ ~ ⑧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의료기기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 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제39조(보호의무자)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u> <u>아니한 사람</u>	<u><삭 제></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허가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 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 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할 수 없다.	⑥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5. (생략) ③ ~ ⑪ (생략)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략)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u>	4. <u>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u>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화장품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제3조의3(결격사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u>피성년후견인</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